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이 지난 '97.8.28일자로 개정(법률 제5394호)됨에 따라 먹는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먹는물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보전.이용을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령이 '98.1.13 국무회의를 통과하고,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.

<편집부>

1. 시행규칙의 주요내용

- ▶ **샘물개발허가대상 확대 및 허가절차 개선.**
 - 지하수자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외에 주류·청량음료·드링크류 등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는자까지 허가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써 샘물의 채수과정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
 - 샘물개발허가를 가허가와 허가로 구분하여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샘물개발 허가를 하도록 허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
 - 샘물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 및 수질의 변화상태를 파악하여 취수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시 모든 양수정에 대한 동시 시험을 실시하고 갈수기를 포함하여 월 1회씩 6회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조사방법을 구체화하였다.
- ▶ **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지정요건 및 관리 강화.**
 - 환경영향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수분야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자원연구소를 법정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하였고
 -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지정요건중 수질관리기술사를 1명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였으며
 -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현행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에서 3월로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.
- ▶ **정수기신고제 도입으로 적합한 제품만 유통.**
 - 정수기제조업.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수기의 품목·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,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,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·도에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
 - 정수기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수기 제조업자는 수질환경기사·위생사·공정관리기사·품질관리기사 등

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였으며

○ 정수기 제조업자는 정수기의 생산품목의 형식별로 매 6월 마다 1회 이상의 자체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,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

○ 정수기제조업.수입판매업자가 정수기의 유효정수량(정수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여 정수한 물의 총량)을 실제 정수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을 표시하는 행위 등의 허위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였으며

○ 수도물을 불신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판매행위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수리해 주도록 하였다.

※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수리기준

(1) 판매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.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
(2) 판매후 1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.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: 제품교환

(3) 판매후 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

- 수리가 가능한 경우 : 무상수리
-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
-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: 구입가 환불

(4) 품목(모델)이 단종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시부터 3년 이상 보유

▶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 및 취수방지 위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사후관리강화

○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정 및 감시정에 설치한 계측기에 의한 수위, 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먹는샘물의 수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▶ 지하수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방법 개선.

○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먹는샘물외에 샘물 개발 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주류.청량음료.드링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까지 확대하고, 주류·청량음료 등에 대한 부과율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5를 부과토록 하였으며

○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업체별 판매가격에서 평균 판매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전체 업체의 샘물용기의 용량규격별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.